

『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「지방재정법」 제9조의2 및 「지방기금법」 제16조 개정에 따라 회계간의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, 동일 회계연도 내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

3. 주요내용

- 기금의 계정구분 및 재원과 용도(안 제2조~제4조)
- 기금의 관리·운용(안 제5조)
-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(안 제7조)
 - 구미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대상 규정(안 제7조제1항, 제2항)
 - 심의위원회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대행(안 제7조제3항)
- 기금의 존속기한 및 시행규칙(안 제10조~제11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 :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
-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- 합 의 : 감사담당관과 합의되었음
- 기 타 : 해당사항 없음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「지방재정법」 및 「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」이 개정됨에 따라 그 후속조치로 각종 회계·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용하고자 제출된 안으로,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하고 각 계정의 재원과 용도,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설치와 기금의 존속기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임.

○ 검토 결과,

- 경제의 불확실성 증가로 자치단체의 지방세입 변동이 심화됨에 따라 연도별 안정적 재원조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, 이에 재정수입 및 평균 순세계잉여금의 초과금 등 여유재원 일부를 적립하여 재원이 부족한 연도에 부족재원을 충당하기 위한 제도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도입은 필요하다고 사료됨.
- 또한, 상위법에서 특별회계 예비비 편성한도를 예산 총액의 1% 이내로 규정하고 예탁·예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가능하도록 일원화함에 따라 다른 회계 및 기금의 운용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개별기금과 특별회계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통합 관리함으로써, 그동안 특정목적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기금 예치금과 특별회계 예비비를 다른 회계로 융자할 수 있게 되어 보다 효율적으로 재원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.

-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「지방재정법」에 근거하여 구미시를 포함한 전국 모든 광역·기초자치단체에 적용되는 사항이며,
-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의 과다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에 활용하지 못하는 지방재정의 비효율을 개선하고, 코로나19 사태 등 대규모 재난·재해 발생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의 추후 대응을 위한 지방재원을 마련하고자 통합기금을 운용하려는 것으로, 탄력적인 재정운용을 통해 공공행정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.